

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

5-2-17

규정번호	5-2-17
제정일자	2021.10.25
최근개정	2026.7.20
개정차수	2차 개정
관리부서	장애학생지원센터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
2. 장애학생 교수·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 시설·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·교육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(개정 2022.08.08.)
7.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(개정 2026.7.20.)

-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4 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주사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팀장을 둘 수 있다.

- ② 일반직원 및 연구원(계약직)을 전담으로 두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. 다만,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장애학생 수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일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겸직을 둘 수 있다.

제 5 조 (장애학생지원위원회) ① 장애학생지원규정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기획실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장애학생 소속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 한다.

- ③ 장애학생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·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2-17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

5.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
6.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 6 조 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,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6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)